

#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## 심사보고서

내무위원회  
1994. 12. 26.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. 제출일자 : 1994년 12월 14일

. 회부일자 : 1994년 12월 14일

다. 상정일자 : 제 109 회 정기회

. 제 5 차 내무위원회 (1994. 12. 26.) 상정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

#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내무국장 최 경 주)

가. 제안이유

'94 정기재물조사결과 시.도 공동건의사항인 낱용불품의 처분시 활용  
가능물품 중 감정대상 불품금액의 상향조정과 불품출납원의 장부중  
소모품대장을 삭제하는 등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기 위함.

## 나. 주요골자

-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, 수리, 제조시 불품매입등의 요구 생략  
조항 삭제
- 불용품처분시 감정의회단가 상향조정  
불용품 처분시 감정기관 의뢰대상 불품을 활용 가능불품중 불품당  
장부상 취득가격이 “단가 5백만원 이상인 물품” 에서 “단가 1천만원  
이상인 물품” 으로 조정
- 불품출납원의 비치장부 축소 ... 소모품 대장 삭제
- 비품의 구분 기준중 취득단가 조정  
“내용년수가 1년이상의 물품으로 소모성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 
물품과 내용년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만원 이상의  
물품” 을 “취득단가 10만원 이상의 물품” 으로 조정

## 3. 전문위원 검토요지

( 전문위원 우 병 수 )

충청북도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

- 이는 현행물품의 매입, 수리, 제조시 품의요구에 의한 구매절차가 이루어  
지고 있으나 관서당경비에 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고 있어 물품관리  
의 누락현상이 발생되는바 이의 단서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이며
- 불용품처분시 감정기관 의뢰대상 물품을 활용가능물품중 불품당 장부상  
취득가격이 5백만원이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액을 참작 하도록  
되어 있는바 이의 취득가격단가를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코자 함과
- 물품출납원의 비치장부 항목중 소모품대장의 삭제와 이에따른 일련번호

를 조정하고 ②항의 조분중 소모품대장을 삭제코자 하는 것이며  
· 품종의 구분기준 중 비품의 경우 내용년수가 1년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만원이상인 물품을 10만원이상의 물품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 
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의 능률성제고와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 
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승인하여 준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해당사항 없음

5. 토 론 요 지 : 해당사항 없음

6. 심 사 결 과 : 도 원안대로 의결(참석 7인, 찬성 7인)

7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사항 없음

8. 기타필요한 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(안)
- 신구조문 대비표